

## 2022년 중소기업 ESG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충청남도와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「중소기업 ESG역량강화」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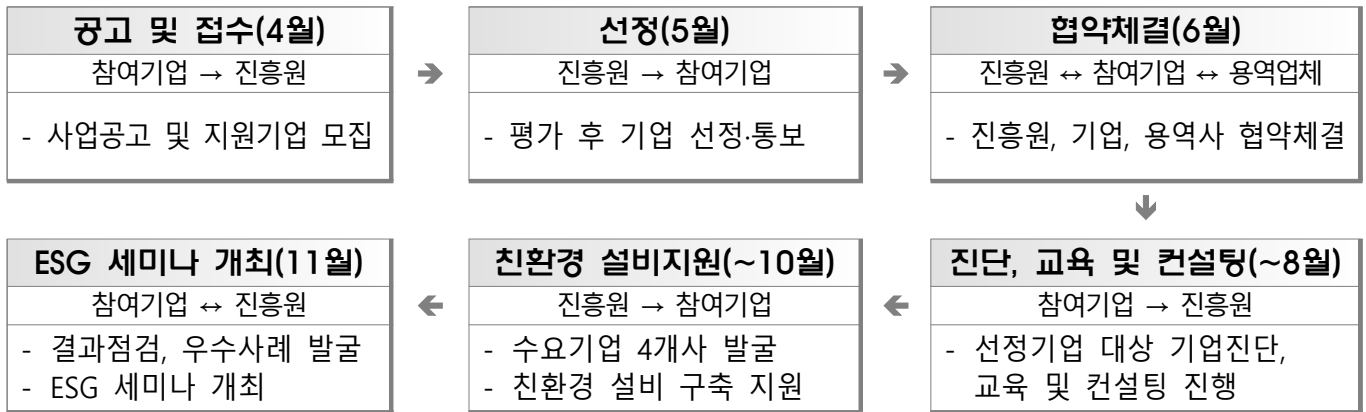
2022년 4월  
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1. 사업목적 : ESG 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, 컨설팅, 교육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
2. 사업기간 : 선정일 ~ 2022년 12월
3.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로 도내에 공장을 등록하고,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
4. 지원금액 : **비용 전액 지원**(단, 친환경 설비 구축 시 최대 1천만원 지원(자부담액 50%이내))
5. 지원내용



- ① 기업진단 : 사업 참여기업 대상 ESG 수준 진단, 평가 및 보고서 발간
- ② 기반지원 :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미흡분야 개선으로 등급 상향 지원
- ③ 역량강화 : 친환경 설비 지원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능력 지원 ※지원대상설비 <붙임 참조> (수요기업 4개사/최대 1천만원 지원(자부담액 50%이내))
- ④ 인식확산 :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ESG 세미나 개최로 도내 ESG 인식 확산  
※ 지원기업 교육 및 세미나 의무참석(일정은 선정 후 안내)

## 6. 지원절차



## 7. 제출서류 및 방법

- 제출기한 : 2022. 4. 15.(금) 09:00 ~ 5. 20.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충남경제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(www.cnsp.or.kr)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 : 필수서류 1~8번 , 선택서류(해당기업) 9~13번

no	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	서식 1
2	활용계획서	서식 2
3	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
4	사업장 확인서류 -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등록대장	건축물등록대장 제출 시 용도 제조업소 또는 공장 표기 必
5	사업자등록증명원	국세청 홈텍스 발급
6	'20년, '21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- '21년 미결산 시, '19년, '20년 대체 제출 가능	
7	'21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
8	정보이용제공동의서	서식 3
9	법인등기부등본	
10	'20년, '21년 직·간접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- 직접수출 : 직수출실적증명(한국무역협회 발급) - 간접수출 : uTradeHub(www.utradehub.or.kr) 간접수출증명	
11	'21년 수출거래처 증빙자료 - 수출신고필증, 영세계산서(간접수출), 인보이스, 계약서 등	단가, 금액, 수량 등 보안내용 삭제 가능
12	ESG항목 준비도 관련 증빙서류 ① ISO인증 ② 제조물배상책임보험(PL) ③ 외부감사기업 ④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⑤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⑥ 외부감사기업 ⑦ 친환경인증(환경마크, 환경성적표지, GR인증, 저탄소제품, 녹색기술제품확인)	해당 시 서류 제출
13	가점서류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④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⑤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기업 ⑥ 충청남도 모범장수 지정기업 ⑦ 글로벌 강소기업 ⑧ 충남형 챔피언기업 ⑨ 상장기업(코넥스, 코스닥, 코스피)	

※ 서류 제출 시, 발급 3개월 이내 서류 제출

## 8. 평가 및 선정

- 평가절차 : 서류심사(정량평가) → 결과통보
  - 평가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50개사 선정
- 평가항목
  - 경영능력(40), 수출수행능력(40), ESG준비도(20), 기타가점(10)
- 선정시기 : 2022. 5. 31.(화) 개별통보

## 9. 유의사항

- 지원제외 대상
  - 공장이 도내에 위치하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 - 휴·폐업 또는 부도,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
 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  -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  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사항
  -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
  -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

## 10. 문의처

-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양빛나 주임 ☎041-539-4524

## <붙임>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 종류

대상 시설 구분	지 원 범 위
폐열회수이용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</li> <li>- 건조배열, 보일러배열, 냉각열 등</li> </ul>
차압터빈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</li> <li>- 스팀터빈 발전, 차압구동 장치 등</li> </ul>
인버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</li> <li>(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및 냉동기 포함)</li> </ul>
고효율 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</li> <li>- LED조명, 모터, Pump, Fan, 교반기, 변압기, 버너, 보일러, 냉동기, 냉온수기, 가스히트펌프, 터보블로워 등</li> </ul>
연료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</li> <li>- 보일러, 건조설비, 버너, 로 등</li> </ul>
가열로 및 열처리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</li> <li>-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</li> <li>-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</li> </ul>
공정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</li> <li>-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</li> </ul>
공정가스 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F가스 등 공정가스* 처리(분해, 회수, 정제, 재사용 등)하는 장치 또는 시설</li> <li>-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</li> <li>* 식각증착 공정의 HFCs(HFC23 제외), PFC, SF6, N2O(질산공정에 한함) 등</li> </ul>
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도,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</li> <li>- 실온제어, 열원제어, 공조제어 등으로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</li> </ul>
에너지관리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, 제어장비,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</li> </ul>
폐기물전처리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</li> <li>- 파쇄기, 선별기 등</li> </ul>
유체커플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</li> </ul>
온실가스* 포집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설비</li> <li>-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,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, 저장 장치 포함</li> </ul>
신·재생 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*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</li> <li>- 신에너지 : 수소보일러, 수소 정제·개질시설, 연료전지 등</li> <li>- 재생에너지 : 태양에너지, 풍력, 바이오에너지 등</li> <li>※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</li> </ul>
폐기물 열분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(가스, 유류)하기 위한 설비</li> </ul>
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</li> <li>-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</li> </ul>
증기 재압축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</li> </ul>